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 정관의 변경	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26일

권 유 자:	성 명: 메디포스트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21 전화번호: 02-3465-6677
작 성 자:	성 명: 오승규 부서 및 직위: 대외협력부 / 프로 전화번호: 02-3465-661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메디포스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5년 09월 26일	라. 주주총회일	2025년 10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	2025년 10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메디포스트	보통주	119,000	0.31	본인	-

※ 소유비율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9월 18일) 우선주를 포함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7,958,099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스카이메디유탄회사	최대주주	보통주 우선주	8,110,227	21.37	최대주주	보통주, 우선주 합계
마블2022홀딩스 유탄회사	특별관계자	보통주 우선주	7,633,727	20.11	공동보유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크레센도제3의디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특별관계자	보통주 우선주	780,278	2.06	공동보유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양윤선	등기임원	보통주	656,176	1.73	등기임원	공동보유자
오원일	등기임원	보통주	82,449	0.22	등기임원	-
계		-	17,262,857	45.49	-	보통주, 우선주 합계

※ 소유비율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9월 18일) 우선주를 포함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7,958,099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서준원	보통주	0	임직원	임직원	-
김희재	보통주	0	임직원	임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5년 09월 26일	2025년 10월 01일	2025년 10월 13일	2025년 10월 1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9월 18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메디포스트	www.medi-post.co.kr	IR → IR공지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21 (우편번호13494)
주식회사 메디포스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2-3465-6615
- 팩스번호 : 02-3465-6688
- 아래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 ~ 10월 13일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5년 10월 13일 오전 11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삼평동, 투썸월드 빌딩) 지하 1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포치료요법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공급업 2. 줄기세포치료제 기술개발, 제조 및 공급업 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4. 화장품 기술개발,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5.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6. 생활용품 도소매업 7. 전자상거래, 통신매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8. 부동산개발, 공급 및 임대업 9. 의료기기 도소매업 10. 연구용역사업 11. 제대혈 및 제대조직 관련사업 12. 외국인 환자 유치업 13. 의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및 위탁업 14. 재생의료 관련 기술개발, 제조 및 공급업 15.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 위탁업 16. 의료관광업 1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포치료요법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공급업 2. 줄기세포치료제 기술개발, 제조 및 공급업 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4. 화장품 기술개발,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업 5.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6. 생활용품 도소매업 7. 전자상거래, 통신매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8. 부동산개발, 공급 및 임대업 9. 의료기기 도소매업 10. 연구용역사업 11. 제대혈 및 제대조직 관련사업 12. 외국인 환자 유치업 13. 의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및 위탁업 14. 재생의료 관련 기술개발, 제조 및 공급업 15.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 위탁업 16. 의료관광업 1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건기식사업부 해외 제품 수입·판매를 통 한 사업 확대 추진 목 적

제15조(전환사채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5조(전환사채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 한도 증액
부칙 제1조(시행일)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제1항 각호의 한도는 본 정관 개정일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규정 추가

※ 기타 참고사항
없음.